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256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 이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 부터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시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금전적 부담제도

□ 주요 골자

- 세입 및 세출(안 제2조 및 제3조)
- 잉여금 처리(안 제4조)
- 예비비(안 제5조)

□ 참조 사항

-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장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이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2조(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 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기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6(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설물로 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미만인 도시는 당해 시장이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지방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운용기준)

①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등은 수입금을 제1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입 법 예 고

· 기 간 : 94. 1. 24 ~ 94. 2. 12 (20일간)

· 결 과 : 의 건 없 습

○ 예 산 상 황 : 해 당 없 습

○ 기타참고사항 :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 1조 (목 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 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2.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 2 관련)
3. 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4. 불법주차장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관련)
6. 교통유발 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
7.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8. 국고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기타 잡수입

② 제1항 제 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 3조 (세 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2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 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6조 (준 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337호)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기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